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도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24. 선고 (춘천)2025노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호"를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협박, 폭행,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

히는 행위(제1호),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호),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동물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동물의 신체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학대'에 관한 정의규정,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것이므로, 현행 동물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2).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오로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나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체계적·논리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목적으로 공소외인이 기르는 여러 고양이 중 어린 고양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다른 고양이의 목을 잡아 이를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공소외인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발로 찬 고양이는 작고 어린 고양이로 피고인이 발로 강하게 걷어차자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서랍 밑으로 굴러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칼이나 가위를 공소외인이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던지거나 고양이들을 잡아서 던진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 고양이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평소 공소외인이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보인 폭력성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고양이가 보인 반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그러

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해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 공소외인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피해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 고양이의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

주 심 대법관 천대엽 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